

# 2021 대구·경북지역 온라인 지원사업 설명회

- 예비창업/초기창업/창업도약 패키지 지원사업 -



대구·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



# 목 차

- 1 예비창업패키지
- 2 초기창업패키지
- 3 창업도약패키지

## 유의사항

- 본 안내자료는 2021년 예비창업/초기창업/창업도약 패키지 지원사업별 주요내용을 요약·정리한 것으로  
사업신청 및 접수, 평가 등 상기 사업의 관련된 모든 사항은 K-Startup 홈페이지의 사업공고를 따름

## STEP 1 창업준비 ➤ 예비창업패키지 지원사업

- ✓ 창업을 준비 중인 예비창업자의 사업화를 위해 창업교육, 전문가 멘토링, 시제품 개발 및 마케팅 등 창업활동에 필요한 비용 지원

### 규모



('21년) 1,002.4억원, 1,530팀 내외 / 3월 공고 예정

### 대상



#### 기술기반 창업을 준비 중인 예비창업자

- 사업공고일까지 창업 경험(업종 무관)이 없는 예비창업자이거나  
    공고일 현재 신청자 명의의 사업체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자  
        \* 과거에 폐업 경험이 있는 자는 이종업종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 
            사업자를 창업할 예정인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
- 나이 제한 없음
- 협약 종료일 2개월 이전까지 창업이 가능한 자

## STEP 1 창업준비 → 예비창업패키지 지원사업

### 지원내용

- 예비창업자에게 시제품 제작, 마케팅, 멘토링 등에 소요되는 사업화 비용을  
**최대 1억원까지 지원(평균 51백만원)**  
\* 재료비, 외주용역비, 기계장치, 특허권 등 무형자산 취득비, 여비, 인건비, 교육훈련비, 광고선전비, 창업활동비 등에 사용 가능
- 예비창업자 창업교육(40시간) 프로그램 운영

사전교육	역량강화교육	심화교육
협약체결 전  사업 운영 기준 및 시스템 사용방법 등에 대한 교육	협약진행 중  아이디어 보완 및 BM 구체화 등 이론 중심의 기초교육 및 창업자 간 교류 활성화 프로그램	협약진행 중  마케팅 · 투자 · 브랜드 개발 · 시장조사 분야에 대한 실무교육

- 창업·경영 전문가인 전담멘토를 매칭하여 경영 자문 서비스 제공
- 보증·투자·판로·네트워크 등 주관기관별 특화프로그램 참여 가능

## STEP 2 창업초기 ➤ 초기창업패키지 지원사업

- ✓ 창업 3년이내 기업에 창업아이템을 사업화할 수 있는 자금과 아이템 실증검증 등으로 구성된 특화프로그램을 지원하여 기업의 안정화 및 성장을 지원

### 규모



('21년) 1,002억원, 960개사 내외 / 3월 공고 예정

### 대상



창업 3년 이내 기업(공고일 기준)

- 2회 이상 창업한 경우

- ① 모든 사업자의 개업연월일 또는 회사성립연월일이 공고일로부터 3년 이내인 경우 ⇒ 신청 가능
- ②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자의 개업연월일 또는 회사성립연월일이 공고일로부터 3년 이내이지만 공고일로부터 3년 이전에도 창업하였을 경우  
⇒ 공고문의 신청 가능한 경우와 신청 불가한 경우에 대한 확인 요망

## STEP 2 창업초기 ➤ 초기창업패키지 지원사업

### 지원내용

#### ① 사업화 자금 : 시제품 제작, 마케팅 등에 소요되는 사업화 자금 지원 (최대 1억원)

\* 재료비, 외주용역비, 기계장치, 특허권 등 무형자산 취득비, 여비, 인건비, 교육훈련비, 광고선전비 등에 사용 가능

#### < 총 사업비 구성 >

정부지원금	창업기업 대응자금	
	현 금	현 물
총 사업비의 70% 이하	총 사업비의 10% 이상	총 사업비의 20% 이하

#### < 예 시 >

총 사업비	정부지원금	창업기업 대응자금	
		현 금	현 물
1억원	7,000만원	1,000만원	2,000만원
100%	70%	10%	20%

#### ② 초기창업 특화프로그램 : 아이템 실증검증, 투자연계 등 지원

## STEP 3 창업도약 →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

- ✓ 창업도약기 기업의 스케일업을 통한 성과창출을 위해 사업모델 개선, 사업 아이템 고도화, 특화프로그램 등 사업화 지원 및 성장촉진 프로그램 운영

### 규모



('21년) 1,020억원, 1,080개사 내외 / 3월 공고 예정

### 대상



창업 3년 이상 7년 이내 기업(공고일 기준)

- 최초 회사설립일이 공고일 기준 7년을 초과한 다수의 사업자(개인, 법인)를 소지하고 있을 경우  
⇒ 공고문의 ‘창업’으로 인정되는 경우와 ‘창업’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대한 확인 요망  
ex) 기존 기업(개인,법인)과 이종업종의 제품을 생산하는 법인사업자로 신청하는 경우 ‘창업’으로 인정

## STEP 3 창업도약 →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

### 사업화지원 내용

- 사업모델(BM)개선, 아이템 검증·보강 등 “매출증대” 및 “시장진입·검증” 등에 소요되는 자금 최대 3억원 지원(협약기간 : 10개월 이내)

#### <총 사업비 구성>

정부지원금	창업기업 대응자금	
	현금	현물
총 사업비의 70% 이하	총 사업비의 10% 이상	총 사업비의 20% 이하

#### <예시>

총 사업비	정부지원금	창업기업 대응자금	
		현금	현물
42,900만원	30,000만원	4,400만원	8,500만원
100%	70%	10%	20%

- 주관기관이 제공하는 성장지원 특화프로그램 및 멘토링 지원

## STEP 3 창업도약 →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

### 성장촉진 프로그램 지원내용

- 성장촉진 프로그램(디자인 개선, 상장촉진 등)별 지원내용에 따라 소요되는 자금 및 서비스 지원

#### <총 사업비 구성>

정부지원금	창업기업 대응자금	
	현금	현물
총 사업비의 70% 이하	총 사업비의 10% 이상	총 사업비의 20% 이하

#### <예시>

총 사업비	정부지원금	창업기업 대응자금	
		현금	현물
2,143만원	1,500만원	215만원	428만원
100%	70%	10%	20%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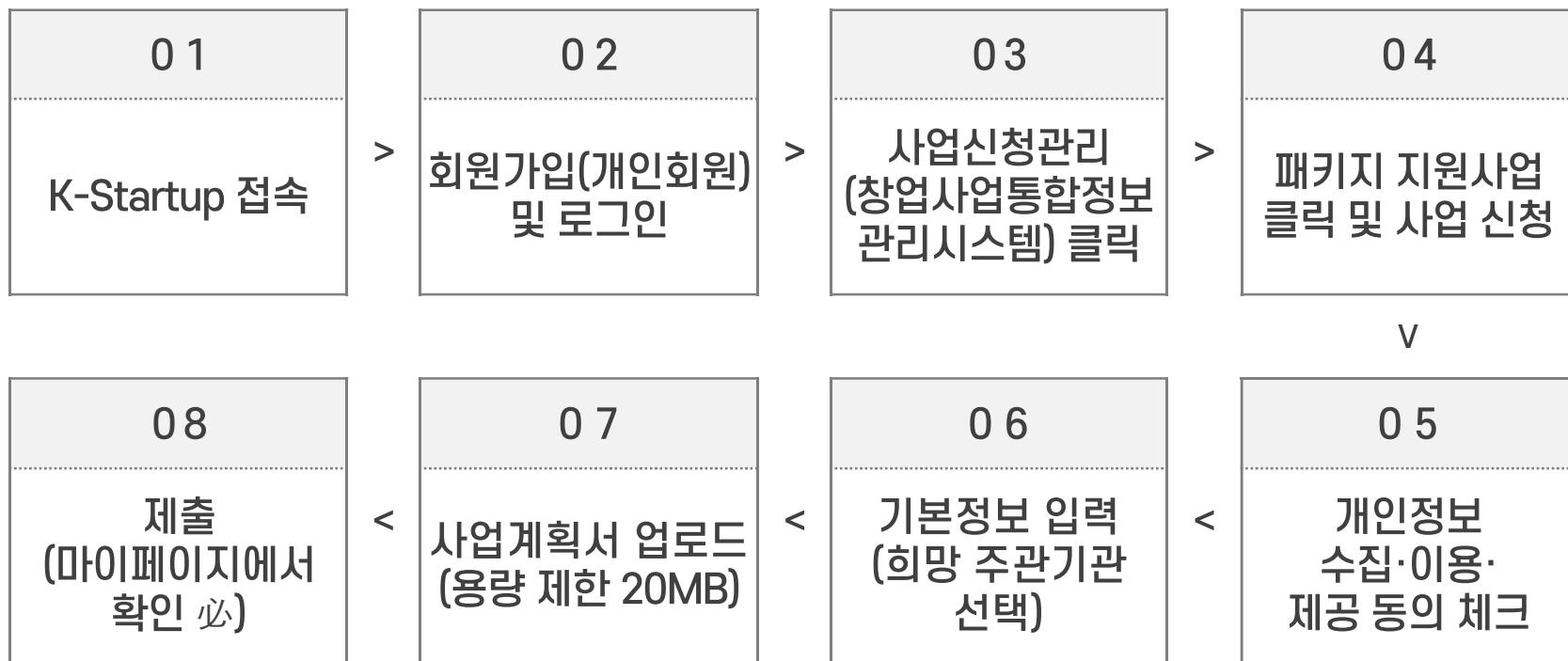
- 프로그램별 교육과정 수료, 선정평가를 통해 최대 1억원 한도에서 자금 지원  
(프로그램 중복 신청 가능)

## 참 고 1

# 패키지 지원사업 신청절차

### 신청·접수

- K-Startup 홈페이지 ([www.k-startup.go.kr](http://www.k-startup.go.kr))를 통해 온라인 신청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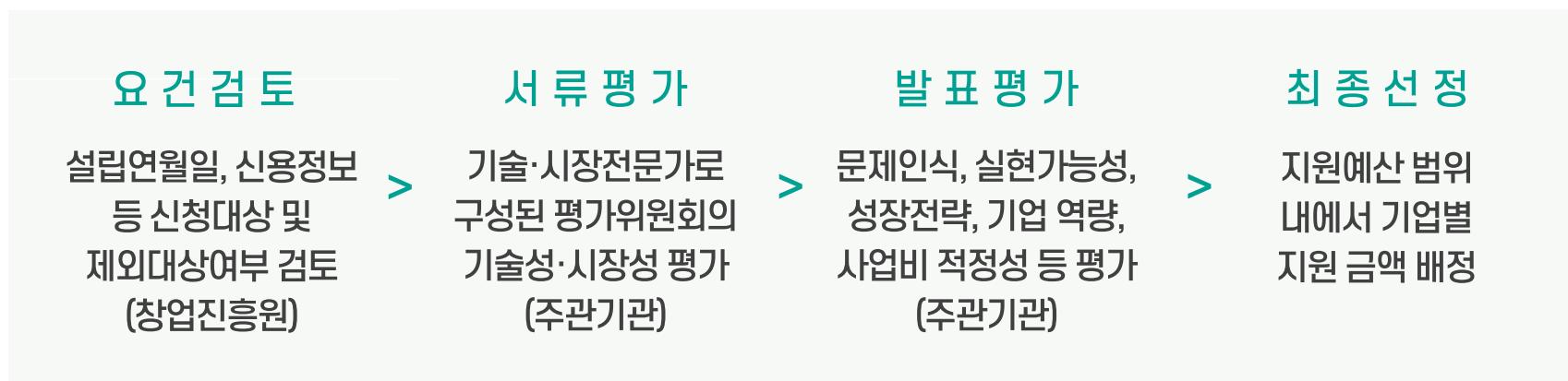
- 신청 마감일 2~3일 전에 'K-Startup 가입 및 사업신청'을 미리 진행하는 것을 권장 (신청 마감일시 전까지 수정 가능, 마감 이후 신청 불가)

## 참 고 2

# 패키지 지원사업 선정절차

### 선정절차

- 제품·서비스 개발동기/개발방안, 자금소요 및 조달계획, 시장진입과 성과창출 전략, 대표자·직원의 보유역량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해 선정



### 참 고3

## 패키지 지원사업 사업비 비목(20년 기준)

비목	정의
재료비	사업계획서 상의 사업화를 위해 소요되는 재료 또는 원료를 구입하는 비용
외주용역비	창업기업이 자체적으로 시제품제작을 완성할 수 없는 경우, 일부 공정에 대해 외부 업체에 의뢰하여 제작하고,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비용
기계장치 (공구·기구,비품,SW등)	사업화를 위해 필요한 일정 횟수 또는 반영구적으로 사용 가능한 기계 또는 설비, 비품을 구입하는 비용
특허권 등 무형자산 취득비	사업계획서 상의 창업아이템과 직접 관련있는 지식재산권 등의 출원, 등록관련 비용
인건비	창업기업 소속직원(정규직, 비정규직, 무기계약직)에 대한 보수 / 사업 수행을 위한 일용직, 기간제 근로자 등 임시직에 대한 보수
지급수수료	기술이전비, 학회 및 세미나 참가비, 전시회(박람회) 참가비, 시험·인증비, 멘토링비, 운반비, 보험료, 법인설립비(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 활용시), 회계감사비 / 기자재 임차료, 사무실 임대료, 보관료
여비	창업기업 대표, 재직 임직원이 사업화를 위해 타국가로 출장 등의 사유로 집행하는 비용
교육훈련비	창업기업 대표, 재직 임직원이 사업화를 위해 기술 및 경영교육 이수 시 집행하는 비용
광고선전비	창업기업 제품과 기업을 홍보하기 위한 홈페이지 제작비, 홍보영상 및 홍보물 제작비, 포장 디자인비, 일간지 등의 광고제작, 기타 마케팅에 소요되는 비용 (또는 계약을 체결하여 외부업체에 의뢰하는 경우 포함)

## 참 고4

# 패키지 지원사업 신청 제외대상(요약)

### 주요 신청 제외대상

※ 상세 내용은 지원사업별 공고문에서 확인 요망

-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(기업)
-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(기업)
-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, 타 중앙정부 및 공공기관의 창업지원사업을 수행 중인 자(기업)로 사업별 신청 제외대상에 해당되는 자(사업별 공고문 참조)
- 신청일 현재 휴업 중인 기업
- 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 시행령 제4조(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)의 업종을 영위하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자(기업)
  - \* 지원제외 대상 업종 : 일반유통주점업, 무도유통주점업,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
-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(기업)

# 감사합니다

예비창업/초기창업/창업도약 패키지 지원사업 설명회



대구·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